

내부통제규정

제 정 : 2010년 4월 1일
개 정 : 2016년 5월 26일
개 정 : 2018년 10월 26일
개 정 : 2020년 2월 12일
개 정 : 2021년 5월 20일
전면개정 : 2024년 11월 7일

제1편 총칙

제1조(제정 목적)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지 제30조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이 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며, 계약에 따라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업무행위는 그 위임받은 업무 범위내에서는 이를 회사의 업무행위로 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통제”는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법규를 준수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
2. “내부통제체제”는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위험평가,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
3. “정보차단벽”은 회사의 중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나 임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무형의 모든 수단, 절차, 규정 및 시스템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등 관련 법률 및 그 하위법령, 지

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규정,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한국거래소의 규정, 사규 등(이하 이 규정에서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세부 지침 등의 제정)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규정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관련 사규에 따르거나 별도의 세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성)

- ① 회사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영업의 종류, 업무의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조직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과 조직구성에 관한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제2편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등

제6조(이사회)

이사회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대표이사)

- ① 대표이사(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경영부문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지원하고 적절한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의무가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사전예방에 필요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유지·운영 및 감독
 2.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
 3. 조직내 각 업무분야에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 부여
 4.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제·운영실태의 정기점검 및 점검 결과의 이사회 보고. 이 경우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체제·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및 이사회 보고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준법감시인)

- ①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내부통제위원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없이 보고할 수 있다.
- ②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내부통제체제 및 이 규정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의 개선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임직원)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등 및 내부통제규정, 윤리강령 등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관계법령 등 및 내부통제규정, 윤리강령 등의 위반(위반가능성을 포함한다)을 인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기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준법감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내부통제규정의 제·개정 등)

- ① 회사는 이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 등의 제·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개정이나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개정은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준법감시인은 이 규정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컴플라이언스 매뉴얼(법규준수 프로그램 포함 가능), 임직원 윤리강령 등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사항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의 설계)

회사는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회사의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12조(경영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전달 체계)

- ① 회사는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회사는 거래상대방과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전산기록을 포함한다) 또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문서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③ 경영의사결정을 위한 임직원의 보고나 의안의 상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두,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 ④ 비밀유지가 필요한 중요한 경영정보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편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체제 운영

제1장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제13조(준법감시인의 임면)

-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 이상으로서 이사회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1. 내부통제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및 위반자에 대한 조사
 2.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게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의 제출 요구권
 3.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내부통제위원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4. 이사회, 내부통제위원회, 감사위원회, 기타 주요 회의에 대한 참석 및 의견진술
 5. 회사 또는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시정, 개선 요구
 6. 준법감시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이수
 7. 준법감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개선 요구
 8.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회사 및 임직원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의 조사, 자료제출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기간을 정한 시정, 개선 요구가 있을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회사 또는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계약서
 2. 대외문서 (일상적이거나 반복적인 문서 및 회사의 권리·의무에 대한 영향이 미미한 문서는 제외한다)

3. 정부 및 감독기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 또는 자료
4. 정관 및 사규의 제정 및 개폐
5.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안건
6. 투자광고
7. 관계법령 및 사규에 따라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8. 그 밖에 준법감시인이 정한 사항

제15조(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

- ①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이하 “준법감시부서”라 한다)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IT부문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내에 IT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전산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③ 기타 준법감시조직과 관련한 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은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

-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의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회사의 본질적 업무(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회사의 경영업무(법 제40조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4. 위험관리 업무
 5. 기타 관계법령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무
-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준법감시체제의 운영

제17조(준법감시체제의 구축)

- ① 회사는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준법감시체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관계법령 등의 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2. 임직원의 관계법령 등의 준수 실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3. 이사회,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관계법령 등의 준수 여부의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4. 정관·사규 등의 제정 및 개폐, 신상품개발 등 새로운 업무 개발 시 관계법령 등의 준수 여부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5. 임직원에게 대한 준법 관련 교육 및 자문
 6.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협회, 한국거래소, 감사위원회와의 협조 및 지원
 7. 이사회, 경영진 및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18조(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운영)

- ①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관계법령 등 및 이 규정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회사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 업무전반에 대한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준법감시 프로그램은 관계법령 등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구축·운영되어야 하며, 적시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프로그램에 따라 임직원의 관계법령 등 및 이 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④ 준법감시인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개선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부통제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업무 관련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준법서약 및 임직원 교육)

- ① 임직원은 회사가 정하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이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관계법령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교육과정에는 임직원의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 직무윤리, 투자자 보호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임직원에게 대한 지원 및 자문)

- ① 준법감시인은 업무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법규 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 필요한 법률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직과 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의 업무수행 과정 등에서 발생한 법률이슈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준법감시업무의 위임)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 중 일부를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제22조(윤리강령의 제정 및 운영)

- ① 회사는 임직원이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윤리와 관련된 윤리강령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윤리위반 신고처 운영, 위반 시 제재조치 등과 같은 윤리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내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보고의무)

-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결재권자와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1.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관계법령 등, 이 규정 및 회사의 정책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2. 정부·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당국”이라 한다), 협회 등이 회사의 주요 내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3. 위법·부당행위 또는 그러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행위와 연루되었거나 다른 임직원이 연루된 것을 인지한 경우
 - 4. 임직원이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이 난 경우
- ②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법령 등, 이 규정 및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절차 및 기준과 상이한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임직원 겸직에 대한 평가·관리)

- ① 회사의 소관부서(임직원 겸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점검·관리하고, 관련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지배구조법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겸직 개시전에 겸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겸직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5. 관계법령 및 사규를 준수하는지 여부
- 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관리 결과 및 점검 수행과정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험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준법감시인은 소관부서로부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부서에 점검내용의 시정 및 점검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내부고발제도)

- ① 회사는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내부고발제도(임직원이 회사 또는 다른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 ② 내부고발제도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금지 등 내부고발자 보호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내부고발자가 고발행위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준법감시인(또는 감사위원회)은 내부고발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내부고발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 ① 회사 및 준법감시인은 관계법령 등 및 이 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관련 임직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대표이사의 주의촉구)

- ① 임직원의 위규, 부당행위 등 비위사실에 대한 비위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하기에는 부적절하거나, 정상을 참작하여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의촉구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주의촉구는 대표이사의 명의로 직접 조치한다.
- ③ 준법감시인은 주의촉구 조치내역을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명령휴가제도)

회사는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휴가를 명령하고, 동 기간 중 해당 임직원의 업무수행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하며,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의 규모 및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직무분리기준 및 신상품 도입 관련 업무절차)

- ① 회사는 입·출금 등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단일거래의 범위는 회사가 정한다)에 대해 복수의 인력(또는 부서)이 참여하도록 하거나, 해당 업무를 일선, 후선 통제절차 등으로 분리하여 운영토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4편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제1장 영업행위 시 준수사항

제1절 영업의 일반원칙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제30조(영업의 일반원칙)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자금의 성격, 위험선호도 등 고객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한다.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3.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관련 위험 등 중요 사항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한

다.

4. 고객의 인적사항 및 매매거래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5. 고객에 대한 허위정보의 제공 및 문서 위·변조, 매매거래 유인을 위한 사기 또는 기망 등 위법·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1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① 임직원은 회사 또는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법 제71조 및 법 시행령 제68조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및 제4-20조 등 관계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기타 투자자보호,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집합투자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법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특정 집합투자재산(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포함. 이하 같음)을 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

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7.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및 제4-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제33조(투자자문업)

회사 및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고객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2절 상품개발 및 판매준칙

제34조(상품개발)

- ① 회사는 신상품을 기획, 개발하는 경우 사전에 신상품의 구조, 위험, 적법성, 금융소비자 보호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신상품에 대하여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5조(마케팅활동)

- ① 마케팅 활동시 금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자를 오인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2. 확정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3. 근거 없는 소문 또는 정보의 제공
 4. 투자자가 투자권유 거부의를 표시하였음에도 거부 의사 표시 후 1개월 이내에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 ② 회사는 투자권유에 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투자 권유 시 투자권유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일반적인 시장분석이나 논평에는 항상 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④ 투자자의 이름을 마케팅자료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된 자료에 당해 자료가 제공 대상자만을 위한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및 운용실적 등을 표시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 만을 표시하거나 강조하는 행위
 - 2. 세전·세후 여부를 누락하여 표시하는 행위
 - 3. 수수료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작아보이도록 하거나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을 크게 인지하도록 하여 금융상품을 오인하게끔 표현하는 행위
 - 4. 미래의 미확정수익을 약속하거나 미실현 수익률을 사용하는 행위
 - 5. 비교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 등과 비교하는 행위
 - 6. 회사에 유리한 집합투자기구 만의 실적을 표시하는 행위
- ⑦ 마케팅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시장에 대한 예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단지 참고자료로서 작성되었고 예측에 따른 행위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뜻의 표현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측에 대한 근거는 회사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⑧ 마케팅활동을 위하여 판매회사, 판매회사의 임직원, 투자권유대행인 또는 공공에 배포하는 광고, 세미나자료, 안내문, 통계자료 등은 관련법규와 협회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마케팅자료를 관련법규가 정하는 최소 보존기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36조(집합투자증권의 판매)

- ① 회사는 회사가 설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84조 제5항 본문에 따라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규정 제31조 및 다른 사규에도 불구하고 회사 및 임직원은 회사가 설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직접 판매할 수 없으며,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판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3절 운용준칙

제37조(운용과 매매의 분리)

- ① 운용담당자는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매담당자는 집합투자재산 회계업무를 겸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사전자산배분 등)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자산배분기준(공모주식 등 장외거래 증권에 대한 배분을 포함한다.)을 마련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체결된 자산은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내역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③ 지정된 집합투자기구에서 매매가 체결된 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별 운용지시를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정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특정 투자자 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가 자산의 거래 또는 배분시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거나 손해를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나 임직원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 및 성과보수를 받는 집합투자기구에 이러한 거래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준법감시인은 취득·처분 등의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의 적정성 및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9조(집합투자업자의 중개회사 선정 기준)

①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할 때 투자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②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할 때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주문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근거나 사유 없이 중개회사간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특히 관계회사 등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매매담당자는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비율에 의하여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대상자산 또는 매매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거나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달리 위탁할 수 있다.

⑤ 준법감시인은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게 하고 기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거래가격의 적용)

① 여러 집합투자기구에 할당되는 동일종목자산(사전자산배분 운용지시에 의하여 같은 시점에 운용 지시된 동일종목 자산)의 체결가격과 수수료는 집합투자기구별로 평균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자산배분이 이루어지고 중개회사를 달리하거나 집합투자기구별로 주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에 운용담당자가 자산의 거래가격을 임의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법규와 자전거래 세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대리행사)

① 회사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때 투자자에 대한 선관의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집합투자기구에 가입된 투자자 이익 최우선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을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절 기준가격 등 오류수정

제42조(기준가격의 적정성 여부 검증)

회사는 기준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자체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를 검증하여야 한다.

제43조(매입·환매 청구의 정정)

① 회사가 판매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청구 내역을 정정하는 경우 투자자간, 회사와 판매회사 간 또는 판매회사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제1항의 정정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담당부서로 하여금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오류수정 원칙)

①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운용지시 및 평가 등 회사가 그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투자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적용한다.

1. 임직원은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오류발견 내용을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중대한 오류는 대표이사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쳐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3. 오류수정으로 집합투자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진다.

②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 오류가 발생한 경우 오류수정 원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5조(오류발생 보고)

① 오류가 발생한 경우 소관부서장은 오류발생 사실을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에 의할 경우 오류수정이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하거나 분쟁발생의 우려가 있는 등 사안이 급박할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류수정 완료 후 즉시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대한 오류의 발생 사실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오류 시정방법은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오류발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오류발생 일자 및 시간
2. 최초 발견자 및 발견 경위
3. 오류의 유형 및 내용(발생경위 포함)
4. 발견 이후 보고 및 조치사항(손해배상 관련사항 포함)
5. 정정 후 결과 및 제반 변동사항
6. 각 변동사항에 대한 대응 조치
7. 투자자에 대한 영향 및 투자자보호에 대한 사항
8. 신탁업자에 대한 조치사항
9. 기타 오류수정에 따른 중요사항

제46조(오류의 수정)

- ① 오류가 발견된 경우 소관부서장은 이를 수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다른 집합투자기구 등의 자산구성에 영향을 주는 오류 수정은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 등의 운용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관계법령, 집합투자규약, 제안서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오류의 수정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관련회사(중개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와 합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오류의 발생 및 수정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집합투자기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 ⑤ 소관부서장은 오류발생 및 수정내역을 기록 유지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7조(오류발생 및 수정결과의 대외 통지)

소관부서장은 공고된 기준가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판매회사, 신탁업자, 기타 관련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재발방지대책 수립)

준법감시인은 유사한 오류 또는 기준가격 재작업 원인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당해 소관부서장에게 오류 발생원인의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을 요구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장은 준법감시인이 요구하는 기간까지 관련자료와 함께 그 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절 기타

제49조(선물, 향응 등의 부당한 수수금지)

- ①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한 선물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2. 부당한 금전적 보상이나 상품의 지급,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
 3. 법령에 위반하는 금품, 선물, 경조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
 4. 제3자에게 용역을 의뢰하거나 의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정당한 대가 이외의 금전적인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
- ② 임직원은 판매회사 및 그 임직원, 기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기준 또는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③ 선물 등의 수수시 조치,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에 대한 신고절차 등은 내부통제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제50조(대외활동)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대외활동에 관하여 회사, 주주, 임직원과 투자자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법인에 고용되는 경우
2. 임직원이 공개되지 아니한 금융회사의 지분을 가지는 경우
3. 임직원이 회사 외부기관과 고용 및 사업상 연관관계가 있으며 회사가 이를 통제할 수 없는 경우
4. 다른 금융투자업자, 은행, 보험 등의 금융기관에서 운용업무 등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5. 회사의 업무시간 또는 회사의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외활동

②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외활동에서는 비밀유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에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허용된 대외활동 이외의 일체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외활동을 하는 임직원이 해당 활동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회사, 주주 및 고객 등과의 이해상충이 확대되는 경우 회사는 대외활동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즉시 회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평판을 이용하거나 평판이 손상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대방이 회사의 평판에 대하여 오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방송 및 언론매체 접촉)

① 임직원이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방송, 인터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사전적으로 회사의 정책과 방향에 대하여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방송, 인터뷰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전승인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 사용되는 원고나 자료를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 원고나 자료작성에 제35조를 적용한다.

- ③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개인의 의견은 명확히 구별하여야 하며, 회사의 명확한 경영철학 및 원칙에 반하는 개인의견을 언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주제에 관련한 주장의 근거는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 ⑤ 집합투자기구 등의 운용성과에 대하여 언급할 때에는 보수 포함 유무, 기준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⑥ 강연 등으로 취득한 금전적인 보상은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고, 취득을 허락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⑦ 강연 등에서 금지되는 내용 및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내용에 대한 언급
 - 2. 투자권유로 해석될 수 있는 단정적인 시장전망 또는 의견과 특정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판단 또는 의견
 - 3. 투자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특정 투자자에 대한 언급
 - 4. 회사 경쟁업체의 상품, 인력, 정책에 대한 비방
 - 5. 회사가 관련되어 있거나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
 - 6. 전·현직 임직원의 업무수행능력, 투자실적에 대하여 근거 없는 주장 및 언급
 - 7. 회사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제에 대한 언급
 - 8. 미래의 투자 결과에 대하여 확정적인 판단을 제시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
 - 9. 과거의 실적을 근거 없이 과장하는 행위
 - 10. 확정되지 아니한 기획단계에 있는 상품에 대한 언급

제52조(집합투자기구 등 관련 공시)

- ① 회사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공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이를 공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공시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및 관리책임자 등은 공시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문서의 관리)

- ① 회사 및 임직원은 투자자 등 거래당사자들과의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또는 관련법규에 따라 유지·관리해야 할 서류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문서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문서 또는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 작성된 문서 또는 기록을 위·변조하는 행위

2.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문서 또는 기록을 작성하는 행위
 3. 비밀로 분류된 문서 또는 기록에 필요한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4. 비밀로 분류된 문서 또는 기록을 사전승인 없이 열람 또는 유출하는 행위
 5. 비밀로 분류된 문서 또는 기록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행위
 6. 문서의 보존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하는 행위
- ③ 회사는 관련법령 등에서 작성·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부·서류 등을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간까지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자금의 조달 및 운용)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적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거래상대방이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 해당 여부
2. 자금차입 또는 대여 이율의 적정여부
3. 위임전결규정의 준수 여부
4. 어음, 수표의 사용 및 관리의 적정 여부
5. 자금 회수의 적정성
6. 기타 준법감시인이 지정하는 사항

제2장 이해상충의 관리 및 정보차단벽

제1절 일반원칙

제55조(고객이익 우선)

- ①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 ②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 ③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제56조(이해상충문제의 차단)

-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고객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 ①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집합투자업 및 경영·부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투자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임직원과 고객간의 이해상충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2절 비밀정보의 유지·관리

제58조(비밀정보의 정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공개 정보는 기록 형태나 기록 유무와 관계없이 비밀정보로 본다.

1. 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경영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2.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신상정보, 매매거래내역,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에 관한 정보
3. 투자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4. 회사의 경영전략이나 새로운 상품 및 비즈니스 등에 관한 정보
5. 기타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미공개 정보

제59조(비밀정보의 관리)

- ① 임직원은 비밀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
 1. 정보차단벽이 설치된 사업부서 또는 사업기능내에서 발생한 정보는 우선적으로 비밀이 요구되는 비밀정보로 간주되어야 한다.
 2. 비밀정보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

한을 위임받은 자만이 열람할 수 있다.

3. 임직원은 비밀정보 열람권이 없는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안유지가 곤란한 장소에서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비밀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비밀정보가 보관되는 장소는 책임 있는 자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가능하고,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6. 회사가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비밀유지 협약 등을 맺는 경우 관련 임직원은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임직원은 회사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 또는 제삼자를 위하여 비밀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임직원은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비밀정보 열람권이 있는 상급 책임자의 승인 없이 비밀정보를 문서, 복사본 및 파일 등의 형태로 지참하거나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임직원은 회사에서 부여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 없는 비밀정보를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임직원이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퇴직 이전에 회사의 경영관련 서류, 기록, 데이터 및 고객관련 정보 등 일체의 비밀정보를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11. 비밀정보가 다루어지는 회의는 다른 임직원의 업무장소와 분리되어 정보노출이 차단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2. 비밀정보는 회사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이 접근할 수 있으며, 회사는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통제 및 보안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특정한 정보가 비밀정보인지 불명확한 경우 그 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기 전까지 당해 정보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정보로 분류·관리되어야 한다.

제60조(비밀정보 제공절차)

임직원은 타인(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정보의 제공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정하는 사전승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제1호의 사전승인 절차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비밀정보 제공의 승인을 요청한 자 및 비밀정보를 제공받을 자의 소속 부서(외부인인 경우 소속 기관명) 및 성명

나. 비밀정보의 제공 필요성 또는 사유

다. 비밀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제공 일시 등

3.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 과정 중 비밀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정보차단벽

제1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및 부문

제61조(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식별 및 설정)

①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1.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4.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2조에 따른 미공개 자산운용정보

② 회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여부의 판단을 위해 회사의 금융투자업 등 업무와 관련 있는 법인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여부의 식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2.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3.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4.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5.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6.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7.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 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결정
8.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른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의 공시 또는 공표
9.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결정
10.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11.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12. 회사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이에 준하다고 여기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 ③ 제1항제2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 ④ 제1항제3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집합투자재산 중 금융투자상품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1개월이 지난 정보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 ⑤ 임직원은 업무 중 생산 또는 취득하여 알게 된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해당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의 판단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해당 임직원은 해당 정보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 간주하여야 한다.
- ⑥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공개되는 등 해당 정보가 더 이상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서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문에 대하여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부문별 또는 정보별 책임자는 동 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고, 준법감시인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제62조(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기준을 고려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구분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1. 생산·취득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2. 금융투자업의 종류 및 겸영·부수 업무
 3. 구체적인 업무특성, 수익구조 및 이해상충 가능성

4. 기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구분 필요성

② 회사는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서로 다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63조(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활용에 관련된 책임소재)

- ① 회사는 제62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부문별 책임자는 소속 부문의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 수행 목적 범위 외로 활용하거나,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소속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③ 부문별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협의하여 해당 사안과 관련한 정보의 책임자(이하 “정보별 책임자”라 한다)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64조(정보교류통제 담당 부서)

- ① 준법감시인은 정보교류의 차단 및 예외적 교류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한 조직 및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정보교류통제의 업무 중 일부를 준법감시부서의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 ③ 회사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임직원에게 대해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을 부과함에 있어 보다 강화된 준수 의무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65조(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

- ① 회사는 임원(지배구조법 제2조제2호의 임원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감독의 책임 등의 필요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문(이하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이라 한다) 간의 업무를 통할할 수 있도록, 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인은 업무상 필요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임원이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2관 사내 정보교류 차단방법 및 예외적 교류

제66조(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 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 ③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 없이 준법감시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임직원은 습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⑥ 준법감시인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67조(상시적 정보교류차단)

- ① 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제62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무 공간의 분리
2.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또는 제한
4. 기타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무형의 정보차단장치의 설치·운영

-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5조제1항, 제68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예외적 교류의 방법)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또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2. 해당 부문별 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반복적인 교류의 경우 포괄적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
3.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4.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5. 본 조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 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6.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 보존기간 이상 유지·관리할 것

②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예외적 교류의 구체적 방법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의 제공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에 대한 일시적 접근 권한 부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특정 임직원의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으로의 기한을 정한 편입

제69조(후선 업무 목적의 예외적 교류)

① 제68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중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상시 정보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직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관 거래주의·거래제한 상품 목록 작성·관리 및 상시 감시 등

제70조(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①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준법감시인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준법감시인은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제3항에 따른 매매제한 대상 임직원 범위 등을 정하여 거래제한 상품 목록을 통지하거나 이를 조회하도록 할 수 있다.

제71조(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①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거래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구분한 목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거래 유형에 따라 거래 중단,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관 사외 정보교류 차단

제72조(계열회사 등 제3자와의 정보 교류)

① 회사는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해 제67조에 따라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와 무관한 정보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의 교류 또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의 정보교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해상충 우려 및 내부통제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 등 제3자를 유형별로 구분한 후, 각 유형별로 내부통제규정을 달리 정하거나 회사가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는 제3자의 범위를 특정하여 내부통제규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회사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회사와 업무를 제휴한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제휴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회사의 내부통제규정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4.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회사가 금융투자업등 관련 업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에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보제공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④ 제68조 및 제69조는 회사가 계열회사 등 제3자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7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전송요구)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4조(임직원의 겸직)

회사는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열회사 등 제3자의 임직원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5관 기타

제75조(정보교류차단의 기록 유지 및 정기적 점검)

- ① 준법감시인은 정보의 예외적 교류, 거래주의 및 제한목록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 이상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예외적 교류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수령자(또는 임시 편입 대상자) 및 승인자의 소속 부서 및 성명, 정보 수령 일시 또는 편입 일시 및 해제 일시, 교류 정보의 주요 내용 등
 2.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 지정 및 지정해제의 사유 및 일시 등
- ② 준법감시인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기록·유지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각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 별 책임자 명단,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의 명단을 제1항에 따른 최소보존기간 이상 기록·유지하고 감독당국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기록·유지, 정보의 예외적 교류,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목록의 지정과 지정해제등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6조(임직원 교육)

- ①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규정 및 관련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 망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규정 및 관련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사항
 2. 모든 임직원이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무단 이용 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준법감시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회사는 정보교류차단에 대한 사규를 개정하는 경우 임직원에게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제77조(정보교류차단 내역의 공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제6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2. 제62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3. 제70조에 따른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4. 제71조에 따른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5.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제3장 기타 업무행위 시 준수사항

제1절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78조(기본원칙)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자자, 고객, 회사 또는 주주와의 사이에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업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투자자, 고객 또는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매매거래의 규모 및 횟수 등이 과다하여 직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의 성격에 부합되어야 한다.

5. 매매거래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세조종 등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임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회사 또는 투자대상 회사의 미공개정보에 근거한 어떠한 형태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위한 계좌는 본인의 실명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제79조(계좌개설 및 신고)

- ① 임직원은 자기계산에 의하여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장에서 “지분증권 등”이라 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이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금융투자회사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1. 거래 금융투자회사에서 취급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2.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발행 또는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4. 회사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 ③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지분증권 등의 매매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1. 계좌를 금융투자상품별로 구분·설정하여야 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 ④ 임직원은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및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상장 지분증권”이라 한다)의 매매주문이 가능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부통제규정 시행세칙이 정하는 기한까지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좌 명
 2. 계좌번호
 3. 계좌명의인
 4. 계좌개설일
- ⑤ 기업금융 업무,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업무, 조사분석 업무 및 기타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하여 계좌를 개

설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내부통제규정 시행세칙이 정하는 기한까지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생결합증권(ELW 제외)
2.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

⑥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0조(매매거래 내역 보고)

임직원은 내부통제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지분증권 등의 매매명세를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내부통제)

① 임직원이 상장 지분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로 한다.

② 임직원이 상장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수한 날(동일 종목을 다수의 영업일에 매수한 경우 최근에 매수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영업일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1. 매수한 지분증권에서 10% 이상 미실현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③ 상장 지분증권에 대한 임직원의 연간 추가 투자한도는 연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누적 투자금액은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가 정하는 한도 또는 제3호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한도를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매도 및 출금거래만 가능하다.

1.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투자된 금액이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공모로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청약에 따른 배정으로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④ 제3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투자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⑤ 임직원은 지분증권을 신용거래 또는 미수거래의 방법으로 매매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내파생상품 및 ELW.
2. 회사 및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부동산투자회사·특수목적기구 등에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의 지분증권
3. 기타 회사가 정한 금융투자상품

⑥ 임직원은 제79조부터 제8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79조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0조, 제81조 제1항 및 제7항을 적용한다.

1. 회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공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2. 회사가 운용하는 부동산투자회사·특수목적기구의 지분증권
3. 그 밖에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⑦ 기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대한 절차 등은 내부통제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제2절 신용정보의 관리·보호

제82조(신용정보 관리·보호 정책의 수립)

회사는 신용정보 관리·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의 제정 등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83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운영)

회사는 신용정보 관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4.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7.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84조(임직원의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업무별·직급별로 차등 부여하고 신용정보 조회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신용정보 무단조회 행위 등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역할 및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재직 중인 임직원 및 퇴직하는 자에 대해 신용정보의 유출·도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5조(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회사는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제3절 자금세탁행위 방지체제 구축·운영

제86조(자금세탁 방지체제의 구축)

- ① 회사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및 고객확인 의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 조직 및 시스템 등 자금세탁방지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특정금융정보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고책임자 임명 등의 조직체계와 내부 지침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체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독립적 감사체계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소속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임직원의 신원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7조(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 ① 회사는 경영환경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 및 거래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는 등 관리 수준을 차등화 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거래패턴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룰(rule), 스코어링(scoring)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88조(보고체계 수립[STR, CTR])

회사는 STR과 CTR 보고대상 거래를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내부 보고체계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외부 보고체제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89조(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료보존)

① 회사는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고객확인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대리인, 실소유자 포함)에 대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고객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
2. 고객신원정보 외에 금융거래의 목적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한 자료
3. 고객확인을 위한 내부승인 관련 자료
4. 계좌개설 일시, 계좌개설 담당자 등 계좌개설 관련 자료 등

③ 회사가 금융거래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에 사용된 계좌번호, 상품 종류, 거래일자, 통화 종류, 거래 금액을 포함한 전산자료나 거래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의 사본 및 업무서신
2. 금융거래에 대한 내부승인 관련 근거 자료 등

④ 회사가 내·외부 보고와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심되는 거래 보고서(사본 또는 결재 양식) 및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2.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3. 의심되는 거래 미 보고 대상에 대하여 자금세탁 등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및 기타 자료
4. 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경영진 보고서 등

⑤ 회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활동의 설계·운영·평가와 관련된 자료
2. 독립적인 감사수행 및 사후조치 기록
3.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교육내용, 일자, 대상자를 포함한 교육 관련 사항 등

제90조(자료의 보존방법 등)

- ① 회사는 제89조에 따른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원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보고책임자의 책임하에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또는 문서보관소(이하 이 조에서 “본점 등”이라 한다)에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등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제89조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91조(보고 사실의 비밀 보장)

회사는 임직원의 혐의거래 보고와 관련된 사실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혐의거래의 보고책임자 및 전담직원은 임직원에게 의하여 제공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절 민원 및 분쟁 처리

제92조(고충처리 정책)

회사 및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전화, 방문, 문서(홈페이지 게시 포함) 등의 방법으로 제기한 각종 고충 및 불만사항(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93조(민원 및 분쟁처리 절차)

- ① 민원 및 분쟁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 ② 부서 장은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등 성실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회사의 민원책임자는 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책임 있는 회신문을 고객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회신문 전달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민원내용을 민원책임자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4조(민원 및 분쟁처리의 수행)

- ① 회사는 민원 및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가 민원 및 분쟁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 ② 회사는 민원 및 분쟁의 처리절차 및 보고체계, 결과 회신 등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가 민원 및 분쟁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민원 및 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민원책임자는 민원담당 직원의 교육 및 민원예방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매뉴얼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교육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의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은 민원 및 분쟁 처리과정 중 제도적·절차적 문제점을 인지하게 된 경우 민원책임자에게 개선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홈페이지에 민원접수방 운영 등 고객의 효율적인 민원제기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절 정보제공 및 전자통신수단 사용

제95조(정보제공 시 준수사항)

- ① 임직원은 언론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시장상황 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제공하는 정보가 거짓의 사실 또는 근거가 희박하거나, 일반인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
 2. 전체적 맥락에서 당해 정보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3. 정보제공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4. 내용의 복잡성이나 전문성에 비추어 언론기관 등을 통한 정보 전달이 적합한지의 여부 등

제96조(전자통신수단 사용 시 준수사항)

임직원은 이메일, 대화방, 게시판 및 웹사이트 등의 전자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과 고객 간의 이메일은 사용장소에 관계없이 관계법령 등 및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임직원의 사외 대화방 참여는 공중포럼으로 간주되어 제95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웹사이트 등에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분석이나 권유와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고 그 내용을 인용하거나 기술적 분석에 따른 투자권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절 전산시스템

제97조(전산설비)

- ① 회사의 전산설비는 정보시스템,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과 성능이 검증되어 있어야 하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 ② IT담당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유효성과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전산시스템의 안전성
 2. 전산처리시스템 용량의 적정성

제98조(보안관리)

- ① 회사는 시스템보안, 통합단말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안, 네트워크보안 및 관리보안 등에 관리 체계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내용을 준법감시인 또는 해당 업무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보안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련 사규 및 세칙에 따른다.

제99조(전산장애 관리 및 대책 마련)

- ① IT운영담당 부서장은 전산장애 분류기준을 정하고 분류된 모든 전산장애에 대해 전산장애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전산장애 발생시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에게 전산장애 내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IT운영담당 부서장은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방지 등

제1절 불공정거래 행위

제100조(정의)

“불공정거래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2. 법 제176조의 시세조종행위
3. 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
4. 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101조(임직원 금지사항)

임직원은 제100조 각 호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정보이용 교란행위

제102조(정의)

- ① “정보이용 교란행위”란 법 제1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말한다.
- ② “중요정보”란 법 제178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제103조(시장질서 교란행위 대상 정보의 관리)

- ① 임직원은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중요정보”와 관련한 정보차단벽 설치·운영, 임직원에 대한 접근권한 설정 및 정보차단벽 통과 등에 대해서는 제66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 ③ 회사는 “중요정보”와 관련된 “지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정보의 중요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70조의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등재하여 임직원의 매매거래 및 회사의 고유재산 거래를 제한하거나 매매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이 “중요정보”와 관련된 사내 및 사외 회의, 통신행위를 하는 경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절 시세관여 교란행위

제104조(정의)

“시세관여 교란행위”란 법 제178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말한다.

제105조(점검시스템 구축·운영)

회사는 전조의 “시세관여 교란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4절 공통사항

제106조(예방교육의 실시)

회사는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7조(시장질서 교란행위 발생 시 조치)

회사는 임직원 및 투자자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사후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부 칙 <2010년 4월 1일>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년 5월 26일>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년 10월 26일>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년 2월 12일>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년 5월 20일>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년 11월 7일>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